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 ·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검토 보고

- 1. 기획예산과-2275(2016. 2. 23)호와 관련입니다.
- 2. 제239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6. 2. 22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 - 가. 조례안명: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
 - 나. 제안이유 : 붙임 참조

다. 주요내용

- 1) 제4조(통장의 임기)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연임(단서 신설)
- 2) 제7조(임무) 1항 12. 복지대상자 파악, 틈새계층·위기가정 발굴 연계 업무(추가 신설)
- 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않음

붙임: 1. 검토의견서 1부.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. 끝.

주무관	박명희	자치행정담당	이철암	자치행정과장	박성도	행정국장	02/23 손정수	
협조자	법제담당	박기훈						
시행 기	다치행정과-4428	()	접수		()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http://www.seongbuk.go.kr 전화 4356 /전송 02-2241-6589 / pmhee@sb.go.kr / 부분공개(5)								